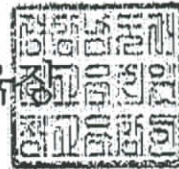


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

「학교보건법」 제5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 고시합니다.

2014년 10월 21일

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교육장



- 1.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일자 : 2014년 10월 21일
- 2.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
 - 가. 절대정화구역: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
 - 나. 상대정화구역: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
- 3.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: 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6조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
- 4.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대상학교

구분	학교명	소재지	정화구역면적(㎡)		비고
			절대	상대	
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설정	거제국제외국인학교	거제시 옥포1동 302	31356.19	186294.04	교명변경
	아이센터유치원	거제시 양정동 331	13429.08	134411.68	원명변경
	한솔유치원	거제시 사동면 사동리 395-3	7771.39	156572.95	원명변경
	운솔유치원	거제시 문동동 361-8	7409.83	146873.55	원명변경

- 5. 설정구역의 고시 :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,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은 거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탑재 및 게시판에 공개(고시자료는 거제교육지원청 및 해당

학교에서 열람 가능)

6. 참고사항 :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의 구역 내 전 지역은 토지분할 · 합병, 지번 · 지목 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, 학교명 변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화구역에 해당됨.

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

범 례	× 절대금지
	△ 상대적금지시설
	— 금지규정 적용제외

■ 「학교보건법」 제6조제1항 및 「같은 법시행령」 제6조

구분	초·중·고		유치원·대학		비고
	절대구역	상대구역	절대구역	상대구역	
1 대기/악취/수질/소음/진동/	×	×	×	×	배출허용/규제 기준 초과시설
2 총포/화약/고압/천연/액화석유가스제조장 및 저장소	×	△	×	△	
4 제한상영관	×	×	×	×	
5 도축장,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	×	×	×	×	
6 폐기물수집장소	×	△	×	△	
7 폐기물처리시설/폐수종말처리시설/축산폐수배출·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	×	×	×	×	
8 가축사체처리장/가축가공·처리시설	×	×	×	×	
9 감염병원/감염병격리병사, 격리소	×	×	×	×	
10 감염병요양소/진료소	×	△	×	△	
11 가축시장	×	×	×	×	
12 유흥주점/단란주점	×	△	×	△	
13 호텔/여관/여인숙	×	△	×	△	
14 당구장	△	△	—	—	현재결정(97.3.27)반영
15 사행행위장/경마장/경륜장/경정장(창외발매소 포함)	×	△	×	△	·이상,95년말한 정비 ·경륜장등'09.12.31만 정비
16 게임제공업/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	×	△	—	—	청소년/일반 게임장
17 미니게임기	×	△	×	— △	고등교육법제2조각호제외
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	×	△	×	△	
19 전화방, 화상방/성기구취업소/키스방, 유리방, 성인PC방, 루게텐, 인형체험방, 전립선마사지 등	×	×	×	×	
20-1 특수목욕장 증 증기탕	×	△	×	△	
20-2 만화가게	×	△	—	—	
20-3 무도학원/무도장	×	△	×	△	
20-4 노래연습장업	×	△	—	—	
20-5 담배자동판매기	×	△	—	—	
20-6 비디오촬영상설업/비디오물소극장업시설/복합영상물제공업시설	×	△	—	—	·이상,98년말한 정비

※ 상대적 금지시설 :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구역(상대정화구역, 당구장은 절대구역 포함)안에서 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(해제)을 받으면 설치 가능한 시설

